

# 예 산 총 칙

2017년도 본예산

제 1 조 2017년도 세입·세출 예산총액 및 회계별로 일시 차입할 수 있는 최고액은 다음과 같다.

(단위:천원)

구 분	세입·세출예산총액	일시차입한도액
합 계	575,444,363	17,263,331
일반회계	518,548,528	15,556,456
특별회계	56,895,835	1,706,875
공기업특별회계	51,418,351	1,542,551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36,978,824	1,109,365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14,439,527	433,186
기타특별회계	5,477,484	164,325
의료보호비 특별회계	1,796,464	53,894
농공단지조성 특별회계	1,640,370	49,211
주민소득사업 특별회계	1,690,175	50,705
주차장사업 특별회계	350,475	10,514

제 2 조 세입·세출예산의 명세는 별첨 "세입·세출예산"과 같다.

제 3 조 2017년 채무부담 행위는 [해당없음]으로 한다.

제 4 조 2016년 명시이월 사업은 붙임 "명시이월 사업조서"와 같다.

제 5 조 계속비 사업은 [해당없음]으로 한다.

제 6 조 일반회계 예비비는 5,163,685천원으로 한다.

제 7 조 지방채 차입 한도액은 13,800,000천원으로 한다.

제 8 조 지방재정법 제47조 제1항의 단서 규정에 의한 기준인건비에 포함된 경비 및 동일 부서에서 동일 부문에 있는 정책 사업간의 경비는 상호 이용할 수 있다.